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요약

(단위 : 원)

업종	업종명(세부)	기준자본금			업종명(세부)	기준자본금		
		구분	당초	변경		구분	당초	변경
종합 건설업	토목공사업	법인	7억	5억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	12억	8.5억
		개인	14억	10억		개인	24억	17억
	건축공사업	법인	5억	3.5억	조경공사업	법인	7억	5억
		개인	10억	7억		개인	14억	10억
	토목건축공사업	법인	12억	8.5억				
		개인	24억	17억				
전 문 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법인	2억	1.5억	포장공사업	법인	3억	2억
		개인				개인	6억	4억
	토공사업	법인	2억	1.5억	수중공사업	법인	2억	1.5억
		개인				개인		
	습식방수공사업	법인	2억	1.5억	조경식재공사업	법인	2억	1.5억
		개인				개인		
	석공사업	법인	2억	1.5억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법인	2억	1.5억
		개인				개인		
	도장공사업	법인	2억	1.5억	강구조물공사업	법인	3억	2억
		개인				개인	6억	4억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법인	2억	1.5억	철강재설치공사업	법인	10억	7억
		개인				개인	20억	14억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법인	2억	1.5억	삭도설치공사업	법인	3억	2억
		개인				개인	6억	4억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법인	2억	1.5억	준설공사업	법인	10억	7억
		개인				개인	20억	14억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법인	2억	1.5억	승강기설치공사업	법인	2억	1.5억
		개인				개인		
	기계설비공사업	법인	2억	1.5억	가스시설공사업(1종)	법인	2억	1.5억
		개인				개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법인	2억	1.5억	가스시설공사업(2,3종)	법인	없음	없음	
	개인				개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법인	2억	1.5억	난방시공업(1~3종)	법인	없음	없음	
	개인				개인			
철도궤도공사업	법인	3억	2억	시설물유지관리업	법인	3억	2억	
	개인	6억	4억		개인			